

#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자체평가 규정

□ 제정 : 2021. 5. 1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단(이하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과 평가를 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,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자체평가”라 함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,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.

**제3조(평가원칙)** 평가는 객관성, 합리성, 공정성,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**제4조(평가영역)** 평가영역은 수행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획수립 영역
2. 집행(조직 및 운영) 영역
3. 사업결과 영역
4. 성과지표 영역
5.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하는 영역

**제5조(항목별 평가)**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등급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평가지기)** 평가는 계획·집행·결과 등 사업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되, 평가 시기는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전담부서)**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한 평가 전담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.

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 업무총괄
2.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·관리에 관한 업무
3. 자체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4. 평가결과의 공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반영
5. 자체평가 역량 향상
6.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

**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평가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,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

5-0-35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자체평가 규정

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교내·외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을 20% 이상 위촉한다.
- ③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④ 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 - 1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평가
  - 2.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
  - 3.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
  - 4. 개별사업 결과분석, 종합평가 및 환류
  - 5.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주요 사항

제9조(간사)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평가계획 수립)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단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에 수립하여 확정하여야 한다.

제11조(평가자료 제출) 사업운영 부서는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평가실시) ① 사업단에서는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한다.

② 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

제13조(실사)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사업운영 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평가결과보고) 위원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 부서 확인 후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) ①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안에 사업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자체평가 전담부서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기타)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